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한 제반의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를 둔다.
 - (1) 경상북도 분사무소 : 경상북도(구미시 원평1동 1071-1)에 둔다.
 - (2) 인 천 분사무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940-8)에 둔다.
 - (3) 전라남도 분사무소 : 전라남도(완도군 완도읍 중앙리 782-98)에 둔다.
 - (4) 전라북도 분사무소 :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89-2)에 둔다.
 - (5) 경 기 도 분사무소 : 경기도(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96-2)에 둔다.
 - (6) 제 주 도 분사무소 : 제주도(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218-1)에 둔다.
 - (7) 충청남도 분사무소 : 충청남도(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150-3)에 둔다.
 - (8) 충청북도 분사무소 :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 탑동 270-1)에 둔다.
 - (9) 대 전 분사무소 : 대전광역시(동구 용운동 408-2)에 둔다.
 - (10) 무 안 분사무소 : 무안군(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6-2)에 둔다.
 - (11) 포 향 분사무소 : 포항시(포항시 북구 장성동 1368-2)에 둔다.
 - (12) 강 진 분사무소 : 강진군(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5)에 둔다.
 - (13) 광 주 분사무소 : 광주광역시(북구 청풍동 842-4)에 둔다.
 - (14) 영 암 분사무소 : 영암군(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78-1)에 둔다.
 - (15) 김 포 분사무소 : 김포시(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75-9)에 둔다.

- (16) 해 남 분사무소 : 해남군(해남군 마산면 용전리 388-13)에 둔다.
- (17) 속 초 분사무소 : 속초시(속초시 조양동 1435-4)에 둔다.
- (18) 신 안 분사무소 : 신안군(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392-1)에 둔다.
- (19) 성 남 분사무소 : 성남시(성남시 중원구 중동 269)에 둔다.
- (20) 강 원 분사무소 : 원주시(원주시 행구동 1610-1)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종합 사회 복지관 지원 사업 및 시설위탁 운영
2.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아동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사업 및 시설 위탁 운영
3.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설치·운영·지원사업 및 시설위탁운영
4.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사업 및 시설위탁 운영
5. 아동 복지시설 지원사업 및 시설위탁 운영
6. 보육 시설 지원사업 및 시설위탁 운영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및 시설위탁운영
8. 자활지원 사업, 무료 직업소개 사업, 노숙인 복지 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 및 시설 위탁운영
9.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 지원 및 시설 설치 운영
10. 그 밖의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 (자산 구분)

1.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자산은 보통 자산으로 한다.
 - 1) 별표 제1의 기본 자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 2) 부동산
 -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자산에 편입된 자산

제6조 (자산의 관리)

1. 기본 자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2/3의 찬성 결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1.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시설의 장이 각각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5일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11인
(여성 1인 이상)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이사회 추천이사 2인, 외부 추천이사 3인 포함)
4. 감사 2인(외부 추천 감사 1인 포함)

제16조 (이사의 선임)

1. 이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11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2.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 중 50%는 사회복지사로 하되, 사회복지교수도 포함한다.
4.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 법인은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 임기 등)

1.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1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겸직금지)

1.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시설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 (임원의 해임)

1.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한다.
2.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위반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3) 기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1.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회의 소집 등)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현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를 대표이사에게 포괄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1조 (사무국)

1.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직원)

1.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3조 (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7장 공고 방법

제36조 (공고의 방법)

1.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의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싣는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 (준용규칙)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2조 (운영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의 사용할 인장은 별표Ⅰ, 별지Ⅱ, 별지Ⅲ과 같다.

제5조 (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 규정)

2008년도 신규 임명되는 이사 중 3분의 1은 그 임기를 1년, 3분의 1은 그 임기를 2년, 3분의 1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6년 7월 제110회 총회 실행위원회 개정